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3-02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5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7누4856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A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17. 4. 21. 선고 2016구합76763 판결
변 론 종 결	2017. 11. 22.
판 결 선 고	2018. 1. 17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6. 9. 30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,239,020원, 지방교육세 225,340원(각 가산세 포함)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3-02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1 내지 17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영상 및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농지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5, 6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임을 알 수 있다는 판단을 추가하고,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며,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,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2쪽 제5행의 "2016. 8. 29."를 "2016. 8. 17."로 고친다.

○ 제2쪽 제7행 "신고·납부하였다"를 "신고하였고, 피고는 2016. 8. 25. 원고의 신고내용대로 농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분을 접수·처리하였으며, 원고는 2016. 8. 26.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"로 고친다.

○ 제2쪽 제11행의 [인정근거] 중 "갑 제1 내지 3호증, 갑 제1호증의 2"를 "갑 제1, 2, 8호증, 을 제1호증의 2"로 고친다.

2.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는, 종전까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낮은 세율인 농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높은 세율인 임야세율을 적용하면서 높은 세율을 부과한 사실을 소유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들은 자신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는데, 이와 같이 전 소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3-02

자들이 법규정에 반하는 고율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고율의 세금을 냈다고 해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임을 전 소유자들이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들이 토지 현황이 농지였거나 경작 여부가 불명하였음에도 임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토지의 현황이 임야임이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나. 원고는,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갑 제19호증의 1, 2, 3을 제출하고 있으나, 갑 제19호증의 1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농지로 되어 있으나 도시지역 안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에 불과하고, 갑 제19호증의 2, 3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업경작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,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농지임을 인정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조해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3-02

판사 왕정옥

판사 송혜정